

[별표 2] <개정 2005.3.14>

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(제19조관련)

점 용 목 적	구 비 서 류
유수의 사용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설계서 및 도면(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/3,000 내지 1/6,000의 평면도·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) 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토지의 점용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하천부속물의 점용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평면도(축척 1/3,000 내지 1/6,000) 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수리계산서 3. 표준구조물도 4. 개략공사비산출서 5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. 실시계획설명서·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(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
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공사설명서 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토석·모래·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종단도 및 횡단도 3. 채취량산출서 4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설계서 및 도면(축척 1/3,000 내지 1/5,000의 평면도·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) 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식물의 재식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. 나무심기계획도 4.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

식물의 재식	5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선박의 운항	1. 위치도(축척 1/25,000) 2. 운항계획서(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) 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

비 고 : 다른 법령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란 중 점용 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.